신용정보 활용체제

2021. 04. 01.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이하 '당사'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1조 등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 소신고번호)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업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업종)

나.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설발급정보, 개인대출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사고회원정보

다. 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해당정보의 관련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하 "연체정보등"이라 한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미수발생정보,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 채권정보

라.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일반정보(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경영방식 등 회사의 개황), 재무정보(재무상태, 재무비율), 비재무정보(상장유무,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마. 공공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서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임금의체납(불),법원의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조달청의 정부납품 실적정보, 사망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 정보 등

(2) 이용 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 제공받는 자,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한국신용정보원 - NICE평가정보 - 기타 법률에 의한 제출 등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 정에서 정한 경우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종료 후 5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등 법 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

(2) 파기절차 및 방법

거래종료 후 5년 경과 시 파기(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 상 보관)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가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확 정보 삭제·정정청구권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주체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있고, 당사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신용정보의 종류에 따른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삭제의 요구를 받았을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 철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 등에서 정한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담당부서

구분	성명 /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노연민	02-3779-3320	ym.roh@sangsanginib.com
신용정보관리 담당부서	소비자보호팀	02-3779-3312	consumer@sangsanginib.com

6.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변경

- (1) 이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1. 04. 01. 부터 적용됩니다.
- (2) 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일 2021. 03. 22. / 2021. 04. 01.